

[대학원 이수과정 변경에 관한 세칙]

[시행 2026.2.23.]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백석대학교 「대학원 학칙」 제4조(설치과정), 「대학원 학칙 시행 규정」 제15조(전공변경)에 의거하여 대학원 전공변경, 학위과정변경, 수강반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① 전공변경은 본인이 소속된 대학원에 개설된 전공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.

② 학위과정변경은 기독교전문대학원(신학전공) 소속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.

③ 수강반변경은 신학대학원, 상담대학원(가족상담학전공) 소속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.

④ 대학원별 특성에 따라 지원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(제한) ① 전공변경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, 교육과정 및 강좌개설 제한 등으로 인해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 있다.

② 전공변경은 자격증 취득 관련 전공 또는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전공은 신청할 수 없다.

③ 학위과정변경은 편입학 선발인원 기준에 따라 여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, 1회에 한한다.

④ 학위과정변경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으며, 학위과정변경과 동시에 전공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.

⑤ 수강반변경은 첫 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,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 있다.

제4조(신청) ① 전공변경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 전, 변경 후 전공지도교수 모두의 승인을 받아 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단, 문화예술대학원 실기전공은 전공실기교수변경 신청원도 함께 제출해야 함)

② 학위과정변경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과정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수강반변경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.

제5조(심사) ① 전공변경은 서류심사로 진행하되, 필요에 따라 면접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
② 학위과정변경은 서류심사로 실시하되, 필요에 따라 면접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수강반변경은 필요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선발의 우선순위는 이수학기가 많은 순, 취득학점이 많은 순, 평점평균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.

제6조(등록) ① 변경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된 과정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.

②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변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7조(학점인정) ① 변경이 승인된 자는 변경된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전공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 중 변경 후 전공과 관련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, 부족한 졸

업학점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.

③ 석사과정에서 석·박사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경우,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1학기 6학점, 최대 4학기(24학점)까지만 인정되며, 인정받은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'전적교 인정 학점 ○○학점'으로 표시된다.

제8조(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) ① 변경 전에 합격한 외국어시험은 인정할 수 있다.

② 전공변경 전에 합격한 종합시험 중 전공과목은 인정되지 않으며(공통과목은 인정), 전공변경 후 해당 전공에 따른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

③ 학위과정변경 전에 합격한 종합시험 과목은 인정할 수 있다.

④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」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[전공변경에 관한 지침] 및 [학위과정변경에 관한 지침]은 폐지한다.